

「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
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에 따라, 2년 이상 장기 미개최 등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여,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년 이상 장기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1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비효율적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위원회 정비는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,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